

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마포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 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17조의7 규정에 의한 제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17조의8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위원회조례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운영 및 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1. 3.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10. 25.

김상열의원의 7인

나. 회부일자 : 1994. 10. 27.

다. 상정일자 : 제2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94.11.3)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김상열 의원)

가. 제출이유

- 1994년 7월 6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17호)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규정과 달라진 검사위원의 정수등 선임방법과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회운영 및 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
- 검사위원의 자격을 종전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제2호)
-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정부투자기관, 금융 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의 직에 있던 자”등 신설(안 제2조제1항제3호)

- 검사위원의 정수를 종전 “3인”에서 “5인”으로, 의원인 검사위원은 1인만 선임토록 함(안 제3조제3항)
- 선임된 검사위원에게는 위촉장 교부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17호) 제46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과 달라진 제정들을 정비 보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종전보다 간단명료하게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였으며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안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이 개정하고 제3호를 신설함으로써 현실에 적합한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완화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그중 의원인 검사위원은 1인만을 선임하여 그 책임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하도록 하였음.
- 동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제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함은 물론 불필요한 자구를 정리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위촉장을 교부하는 것과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홍길표 위원) : 결산검사위원이 3인에서 5인으로 증원된 이유는 무엇이며 의

원은 1인만 선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박관수 전문위원) :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에 의거 시, 도는 5~10인이내로 시, 군, 자치구는 3~5인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은 위원정수에 1/3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문(이인구 위원) :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누가하는가?
- 답변(박관수 전문위원)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합니다.
- 질문(한현덕 위원) : 결산검사위원을 5인으로 증원된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박관수 전문위원) : 법령상 강화된 것으로 5인이내에서 선임하면 됩니다.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의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 의견청취를 한바 관계과의 예산 편성요구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 실비변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1
----------	-----

발의연월일 : 1994. 10. 25.

발의자 : 김상열 의원  
외 7인

### 1. 개정이유

1994년 7월 6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

령령 제14317호)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규정과 달라진 검사위원의 정수등 선임방법과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개정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
- 검사위원의 자격을 종전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자”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개정 (안 제2조제1항제2호)
-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의 직에 있던 자”등 신설 (안 제2조제1항제3호)
- 검사위원의 정수를 종전 “3인”에서 “5인”으로, 의원인 검사위원은 1인만 선임토록 함(안 제3조제2항)
- 선임된 검사위원에게는 위촉장 교부(안 제3조제3항)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항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제4항

##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검사위원 2인 증원에 따른 실비변상액)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  
실비변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는 검사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의원인 검사위원은 1인만 선임하며 그 책임자가 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지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기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 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 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관한조례”</u>	<u>제 명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u>
<u>제 1 조(목적) “생 략”</u>	<u>제 1 조(목적) “현행과 같음”</u>
<u>제 2 조(자격) ① “생 략”</u>	<u>제 2 조(자격) ① “현행과 같음”</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u>	<u>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u>
<u>3. “신 설”</u>	<u>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u>
<u>제 3 조(선임방법) ①“생 략”</u>	<u>제 3 조(선임방법) ① “현행과 같음”</u>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은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u>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는 검사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의원인 검사위원은 1인만 선임하며 그 책임자가 된다.</u>
<u>③ “신 설”</u>	<u>③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u>